
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(최기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38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8.

발의자 : 최기상 · 박지원 · 천하람

이성윤 · 이해식 · 안도걸

정태호 · 장종태 · 김기표

김영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면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·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예외적으로 소송사건의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어도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·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그런데 최근 스토킹 범죄자가 그 피해자에게 소액의 금전을 송금한 후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수행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·초본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 가해자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주소가 제공된다는 것은 2차 피해와 범죄의 재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임.

이에 스토킹 피해자, 성폭력 피해자 등이 가해자를 지정하고 그 가해자에게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·초본 교부가

제한되도록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29조).
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7항) 전단 중 “제6항”을 “제6항 및 제7항”으로, “가정폭력피해자등”을 “가정 폭력피해자등 및 스토킹범죄피해자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8항) 전단 중 “제2항제6호에도”를 “제2항제2호(소송·비송사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) 및 제2항제6호에도”로, “가정폭력피해자등”을 “가정폭력피해자등 및 스토킹범죄피해자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0항(종전의 제9항)제1호 중 “제6항”을 “제6항 및 제7항”으로, “제7항 및 제8항”을, “제8항 및 제9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2항(종전의 제11항) 중 “제10항”을 “제11항”으로 한다.

⑦ 다음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피해아동·청소년 등은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자로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(이하 이 조에서 “스토킹범죄피해자등”이라 한다)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·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.

1. 피해자 또는 피해아동 · 청소년

- 가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
- 나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
- 다. 「아동 ·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 · 청소년 및 피해아동 · 청소년의 보호자

2. 제한대상자

- 가. 제1호가목의 피해자에게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 행위를 행한 사람
- 나. 제1호나목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성폭력 행위자
- 다. 제1호다목의 피해자에게 「아동 ·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·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행한 사람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9조(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) ① ~ ⑥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29조(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<u>⑦ 다음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피해아동·청소년 등은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자로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(이하 이 조에서 “스토킹 범죄피해자등”이라 한다)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·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피해자 또는 피해아동·청소년</u></p> <p><u>가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</u></p> <p><u>나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</u></p>

다. 「아동 ·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 · 청소년 및 피해아동 · 청소년의 보호자

2. 제한대상자

가. 제1호가목의 피해자에게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 행위를 행한 사람

나. 제1호나목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성폭력 행위자

다. 제1호다목의 피해자에게 「아동 ·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·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행한 사람

⑦ 열람 또는 등 · 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6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그 제한대상자(이하 이 조에서 “제한대상자”라 한

⑧ -----
----- 제6항 및 제7항 -----

다)에게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·초본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⑧ 열람 또는 등·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2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가정폭력 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하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⑨ 열람 또는 등·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·초본을 교부할 수

-----가정폭력피해자등 및 스토킹범죄피해자등-----

⑨ -----제2항제2호(소송·비송사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) 및 제2항제6호에도
가정폭력피해자등 및 스토킹범죄피해자등-----

⑩ -----

있다.	--.
1. <u>제6항</u> 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<u>제7항</u> 및 <u>제8</u>	1. <u>제6항</u> 및 <u>제7항</u> -----
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	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⑩ (생 략)	⑪ (현행 제10항과 같음)
⑪ 제1항부터 <u>제10항</u> 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,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·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 방법,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⑫ ----- <u>제11항</u> -----